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6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민형배·주철현·정동영

문정복 · 김문수 · 양부남

안도걸 • 이개호 • 박지원

소병훈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각종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작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한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됨.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 대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 해 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함 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폭력·성희 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 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인권"이라 한다)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인권교육 등)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은 제외한다)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에 과한 교육(이하"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인권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 ③ 인권교육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4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 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 다)"을 "기본적 인권"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생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u>①</u>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
	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
	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u>성폭력 ·성희롱으로부터 보호</u>
	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
	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
	라 한다)이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9조의2(인권교육 등) ① 대중
	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
	술인(청소년은 제외한다)은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
	호를 위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
	(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인권교육의 시기 · 방법 등

법률 제20741호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 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 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 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9. (생 략)

② ~ ④ (생 략)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렁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41호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	
정) ①	
<u>기본적 인권</u>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u>.</u>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자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